

특약변경대비표

1. 약관명 : 『 행복Together 정기예금 』 특약 (구 외환은행)
2. 변경 시행일 : 2016년 6월 7일
3. 기존 가입고객에 대한 변경약관 적용 여부 : 적용
4. 주요 변경내용 : 기본적용약관의 변경

개정 전	개정 후	비고
<p>제1조 약관의 적용</p> <p>행복Together 정기예금(구 외환은행)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거치식예금약관(구 외환은행), 예금거래 기본약관(구 외환은행)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2조 ~ 제8조 (생략)</p>	<p>제1조 적용범위</p> <p>행복Together 정기예금(구 외환은행)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<u>거치식예금약관, 예금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</u></p> <p>제2조 ~ 제8조 (좌동)</p>	<p>기본적용약관 변경</p>

「행복Together 정기예금 특약」(구 외환은행)

제1조 적용범위

행복Together 정기예금(구 외환은행) (이하 "이 예금"이라 함)의 거래에는 이 특약 외에 **거치식예금 약관, 예금 거래 기본약관을 적용합니다.**

제2조 가입대상

이 예금의 가입대상은 실명의 개인으로 합니다.

제3조 예금의 종류

이 예금의 예금종류는 정기예금으로 합니다.

제4조 가입기간

이 예금의 가입기간은 1년으로 합니다.

제5조 가입금액

이 예금의 최저가입금액은 1백만원(인터넷뱅킹, 스마트폰뱅킹으로 가입 시 1만원) 이상이며, 1인당 가입한도는 최고 5천만원까지입니다.

제6조 이자지급

- ① 이 예금의 이자는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과 함께 만기일에 일시 지급합니다.
- ② 이 예금의 우대금리는 제7조의 우대금리 적용기준을 만족하는 경우 만기해지시 제공합니다.
- ③ 고객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만기일 전에 지급을 청구할 때는 예금 계약일로부터 지급일 전날까지 기간에 대해 예금 계약일 당시 영업점 및 은행홈페이지에 게시한 중도해지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- ④ 예금의 만기일 이후 청구한 때에는 만기일부터 지급일 전일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예금 계약일 당시 고시한 만기 후 이자율로 셈한 이자를 원금에 더하여 지급합니다.

제7조 우대금리

은행은 이 예금의 가입자가 아래 우대금리 요건중 하나를 충족할 경우 최대 연0.3%의 우대금리를 만기 해지시 제공합니다.

-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온라인뱅킹(인터넷/스마트폰)으로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시 연0.3%

(단, 메시지는 가입계좌별로 작성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)

- 은행 모바일 홈페이지 또는 하나멤버스 앱에서 KEB하나은행과 주거래은행 약속 메시지 작성 후 발급받은 금리우대쿠폰을 이 예금 가입월 다음달 말일까지 등록시 연0.3%
(단, 금리우대쿠폰 등록은 가입계좌별로 등록되어야 우대금리가 적용됩니다.)

제8조 일부해지

이 예금의 일부해지는 만기해지 포함 총3회 가능하며, 이자율은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합니다.
(단, 일부해지 후 잔액은 1백만원 이상 유지하여야 합니다.)

부칙(제정)

이 특약은 2015년 3월 23일부터 시행합니다

부칙(1)

이 특약은 2015년 4월 13일부터 변경 시행합니다.

부칙(2)

이 특약은 2015년 9월 1일부터 가입하는 계좌에 대하여 적용하며,
기존 가입자는 기존 약관을 적용 받습니다.

부칙(3)

이 특약은 2015년 9월 1일 이후 가입한 계좌를 포함하여 9월 11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칙(4)

이 특약은 2016년 2월 12일부터 시행합니다.

부칙(5)

이 특약은 기존 가입자포함 2016년 6월 7일부터 개정 시행합니다.